【예방접종자 격리면제, 해외입국자 검사 관련】

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

1. 국내에서는 확진자 가족도 격리하지 않는 중인데, 해외입국자 격리가 꼭 필요한 것인 지?

○ **해외유입 증가**는 **국내 방역 부담으로 직결**됨에 따라, **최근 지속되는 국내 확진자 증가추세 등을 고려**하여 **해외입국자 격리 완화는 단계적으로 추진 필요**

- **개인별 위험도를 고려**하여,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**격리면제 우선 추진**

2. 일부 위험국(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)에 대해 예방접종자 격리면제를 제외하는 이유는?

○ 국가별 확진자 발생률과 예방접종률, 해당국 출발자 중 국내 입국자 확진율 등과 같은 **방역 상황과 해외유입여부 등**을 **종합적**으로 **고려**하여 **관계부처 협의**를 거쳐 **지정**

- **해외 방역상황** 등 **모니터링**을 통해 **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속적**으로 **현행화**하여 **대응**할 예정

3.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가능한 지?

○ **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입국, 체류하지 않고,** 환승을 위해 **단순경유하는 경우**에는 **격리면제 적용 가능(본인입증 필요)**

- 다만,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직접 입국하지 않더라도, **입국일 기준 14일 이내에 격리면제 제외국가 입국·체류이력이 있는 경우**는 **격리면제 불가능**

4.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은? 이유는?

○ **국내·외**에서 **WHO 긴급승인 백신 2차(얀센은 1차) 접종 후 14~180일** 이내이거나 **3차(부스터샷) 접종**한 자

- 2차 접종 후 항체형성 및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한 것임

5. 2차 접종 후 확진되어, 3차접종을 하지 못한 채 180일이 지난 경우 격리면제가 가능한지? 격리면제가 가능하다면, 입국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하는 지?

○ 돌파감염 등 **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**(얀센은 1차 접종), **3차접종자**와 **동일하게 관리**(180일 지난 경우라도 인정 가능)

※ 확진일과 2차 접종일의 시간순서는 상관없이 모두 인정 가능

○ **접종증명서 및 확진 일자** 기재 **서류**(PCR검사결과서, 완치소견서 등) 확인

6. 격리면제 대상인 '코로나19 확진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'의 경우, 항원검사를 통한 확진도 인정이 가능한 지?

○ PCR검사 등 **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**를 통해 **'양성'이 된 경우만 인정을 원칙**으로 하되, **국내**에서 **전문가 신속항원검사(RAT)를** 통해 확진된 경우는 **예외적으로 인정 가능**

※ 국내에서 기 확진된 입국자라하더라도, 입국 1일차 검사는 반드시 PCR 검사 실시

7. 국내에서는 전문가 RAT를 확진으로 인정 중인데, 입국 후 1일차 검사도 전문가 RAT를 인정해야하는 것이 아닌지?

○ **해외 신종 변이 유입을 지속적**으로 **감시**하기 위해서는 **해외입국자 대상 1일차 PCR 검사**를 통해 **변이분석 진행 필요**

8. 예방접종 대상이 안되는 12세 미만 소아 등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격리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?

○ **개인별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**에 대해 **격리면제 적용**하는 것으로 **12세 미만 소아 전수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은 어려움**

- 다만, **만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**하여 **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**에 한하여, **격리면제** 적용

9. 의학적 사유로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격리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?

○ **개인별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**하는 것으로 사유 구분 없이 **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**의 경우 예방접종자에 대한 **격리면제 적용 불가**

* 부득이한 경우 인도적 목적 등 개별 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제도 활용 필요

10. 확진 후 치료(격리해제)된 입국자의 경우에도 입국전·후 PCR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지?

○ **확진 후 치료(격리해제) 이력**이 있는 **내국인**에 한하여 **입국시 음성 확인서 제출 예외 중**(3.7일~)이나,

- 해외에서 **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, 변이여부 등을 확인**하기 위해, 예외없이 **입국 후 1일차 검사(PCR검사) 실시**

11. 국내에서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하였으나 해외에서 3차접종을 한 경우에는 국내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가 가능한 지?

○ **해외 접종이력이 있는 입국자**의 경우 **Q-code시스템에서 '해외 접종자(직접등록)'를 선택**하고 국내·외 **접종이력을 입력 및 업로드하면 격리면제 가능**

12. 6~7일차 검사 RAT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,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만 수행해야하는지, 권고인 지 의무인 지?

○ **6~7일차 RAT**는 국내 **확진자 동거 가족과 동일한 방식**(자가검사, 의료기관, 선별진료소 중에서 선택 가능)**으로 실시 가능**

- 다만, **시설격리대상자**는 입·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하여, **PCR검사**로 실시

13. 격리면제서 소지자나 A비자 소지자가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, 예방접종완료자 검사장소인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한 지?

○ **사전입력신고시스템**을 통해 **예방접종력이 확인된** 경우, **격리면제서 소지자나 A비자 소지자**라도 예방접종완료자와 **동일한 절차**로 입국 가능

14.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의 입국 1일차 검사 장소는 어디인지?

○ **(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)** 자가 또는 숙소 **관할 보건소**

○ **(단기체류외국인)** 인천공항 **코로나19 검사센터**, 숙소 근처 **의료기관(의료기관에 사전 유선문의 필요)**

*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 http://kdca.go.kr(알림자료-공고/고시 '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') 참고

15. 격리면제서나 A비자를 소지하였으나 예방접종력이 없어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해야하는 소아의 경우, 예방접종력이 있는 보호자와 함께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한 지?

○ **동반입국한 보호자**가 **모두 예방접종력이 확인**된 경우, **소아 등 예방접종력이 없는 격리면제서·A비자 소지자는** 예방접종력이 있는 보호자와 동일한 **절차로 입국 가능**

16.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가 음성확인서를 미제출(부적정한 서류 소지)한 경우,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지? 입국 후에는 격리면제는 가능 한 지?

○ **모든 입국자**는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**음성확인서 없이는** 항공기 **탑승 불가**

○ **입국 후 미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는 단기외국인은 입국불허, 내국인·장기외국인은 시설에서 입국검사**(음성, 입소비용 자부담) **후 격리면제 가능**

【사전입력신고시스템 도입, 특별입국절차 관련】

1. 사전입력신고시스템 입력 방법은?

○ **붙임자료 참고.**

- 해당 붙임자료는 **질병청 누리집, 코로나19 누리집 공지사항('시범운영'으로 검색), 큐코드 사이트(https://cov19ent.kdca.go.kr)** 공지사항에도 게시되어 있음

2. 사전입력신고시스템 입력한 서류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은?

○ **검역 과정 및 사후 표본 조사**에서 **위·변조한 서류 등** 확인시 제출자에 대해 **고발 등 검토**

3. 사전입력시스템 입력은 의무화인지? 의무가 아니라면, 해외입국자에게 사전입력시스템 사용을 독려 또는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 지?

○ **사전입력시스템**은 대한민국 입국자에게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된 **지원 프로그램으로 의무사항은 아님**

* 미이용자 대비 검역시간 50% 이상 단축 효과

4. 지방공항 및 항만으로 사전입력신고시스템 확대 계획은?

○ 향후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를 대비하고 **지방으로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동일 수준의 검역서비스를 제공**하기 위해, **단계적으로 지방공항과 항만으로 사전입력시스템을 확대 중**

○ 항만의 경우 **여객선·크루즈선 운항재개 수요** 발생 시, **사전입력시스템**을 통한 검역서비스 확대 예정